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

2022. 01. 03

**주식회사 세티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01월 03일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보고서

## 1. 일반현황 ( '21년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세티즌
대 표 자	황규원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휴대폰리뷰 및 중고장터(세티즌)/ 약 744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18억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황규원

##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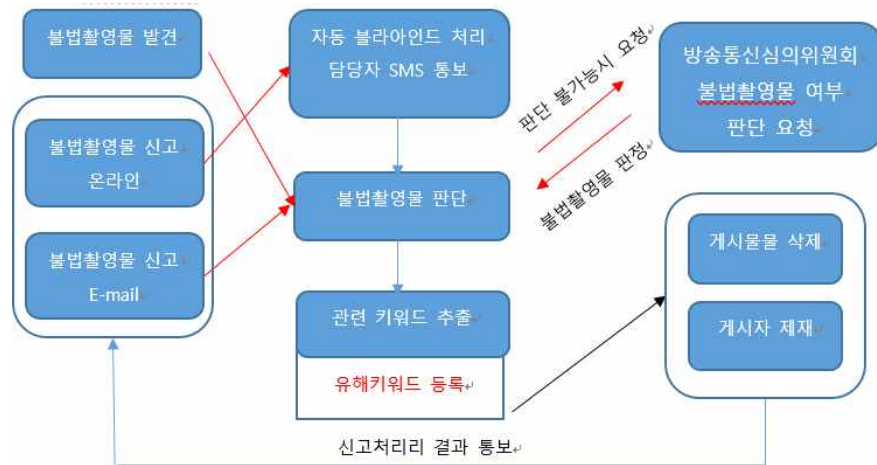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내부규정 및 책임자 지정 (2020. 12월, 문서번호 : 운영 개발 202012-001)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개정 (2022. 1월, 문서번호 CTZ-202201-00001)
  -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 접수 방법

- 각 게시물 본문 우측 하단에 “신고” 버튼을 통해 신고 전용 온라인 페이지 제공
- 이메일 또는 FAX 등의 접수를 위한 다운로드 가능 양식 제공

####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 접수 시 처리 절차

-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삭제 및 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 인·판단 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bad keyword 로 등록하여 검색 및 추가 등록 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한다.
- 게시자의 아이디는 영구 정지 처리한다.
- 신고자 또는 요청기관에 처리에 관한 결과를 14일 이내 회신한다.



[불법촬영물 신고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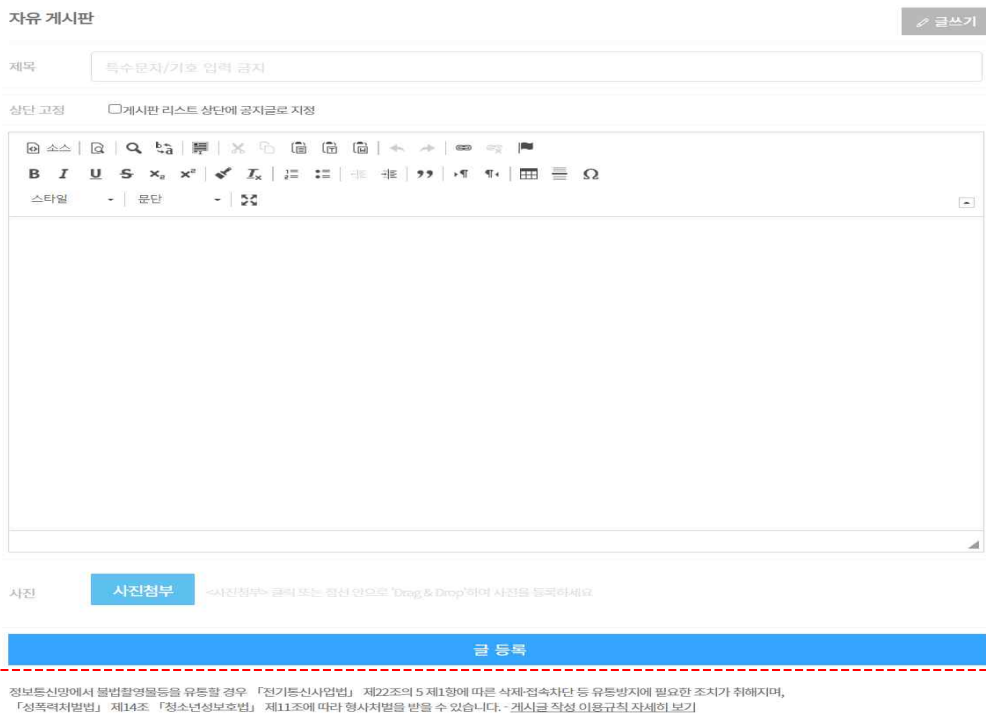
- 온라인 신고기능을 이용한 접수 시 자동 SMS문자 통보 및 블라인드 처리하여 담당자 외에는 확인하거나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하여 담당자가 타 업무 중이거나 부재중이어도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신고된 자료는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며,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신고일시(년/월/일), 신고인 성명(기관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기관-법인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전자우편(이메일)
  - 신고·삭제 요청사유(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처리결과 (내용(삭제 등), 일시, 회신 일시)
-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 제목 또는 본문 내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 또는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불법촬영물등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데이터베이스(DB) 구성·운영한다.
    - 나) 제목 또는 본문 내 불법촬영물에 사용되는 단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해당 단어가 포함된 내용이 검색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다) 지정된 이미지 확장자 파일 외 영상파일은 업로드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 라) 영상 파일이 아닌 텍스트를 통한 링크형식으로 불법촬영물에 연결

된 게시물은 신고 또는 발견즉시 삭제하고 불법촬영물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없어 적용 예외 대상임.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한 처벌조항과 사이트 규정을 홈페이지 게시판 상단에 고정 안내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있음



[게시판 상단 안내문 고정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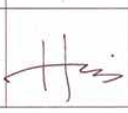

[ 글 작성 시 하단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 (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온라인 신고기능을 이용한 접수 시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실시간 SMS문자

통보 및 블라인드 처리하여 담당자 외에는 확인하거나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하여 24시간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운영·확대 하고 있으며, 깨끗한 인터넷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 캠페인 실시 (게시글 상단 '게시판이용 안내' 고정 게시 등)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기 안 문

문서번호	운영개발 202012-001						
처리기한	2020.12.14			결 재	담당	부사장	대표이사
기안일자	2020.12.14						
기안부서	운영팀	기안자	봉충섭	합 의			
보존기간	3년	협조					
구분	품의						
경유 수신 참조	내부결재	발신		통 제			
제목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처리에 관한 내부규정 및 책임자 지정						
<p>1. 정보통신망법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정, 부를 지정하고 첨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p> <p>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정 : 황규원 대표이사</li> <li>-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부 : 임성전 부사장</li> </ul> <p>첨부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p>							

(주) 세 티 즌

##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 신고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기능을 마련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 고객센터 내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버튼과 신고 전용 페이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게시 글 서비스 내 신고버튼을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페이지 PC : [https://cetizen.com/info.php?q=bad\\_ucc](https://cetizen.com/info.php?q=bad_ucc)**  
**Mobile : [https://m.cetizen.com/info.php?q=bad\\_ucc](https://m.cetizen.com/info.php?q=bad_ucc)**

PC	Mobile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span>신고센터</span> <span>신고사례</span> <span>요금계산기</span> <span>리뷰</span> <span>게시판</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span>mobizen</span> <span>마이페이지</span> <span>로그아웃</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h4>불법촬영물등 신고 안내</h4> </div> <p>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각각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p> <p>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일정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불법촬영물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aff;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불법촬영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li> <li>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aff;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허위영상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흥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작성 또는 가공한 것</li> <li>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작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aff;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아동·청소년 성착취물</b></p> <p>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중·노출하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 또는 일부를 집중·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내용이 표현된 것</p> </div> <p>만일 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게시물의 '신고' 버튼을 이용하거나 아래의 양식을 통해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aaf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10px 0;"> <b>불법 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한글, 워드) 양식</b> </div> <div style="margin-top: 20px;"> <p><b>불법 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b></p> <p>* 요청인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value="성명 또는 기존 닉네임"/></p> <p>연락처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value="기존 비밀번호"/></p> <p>* 전화번호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value="-없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p> <p>* e-mail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value=" "/> @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value=" "/>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value=" "/> <input type="button" value="선택"/></p> <p>요청내역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p> <p>신고·삭제 요청 (중복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li> <li>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대상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근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유통·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허위영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포·판매·유통·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영상물 또는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작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li> <li>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영상물 또는 음성·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작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유통·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중·노출하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 또는 일부를 집중·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표현된 것</li> </ul> </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span>신고센터</span> <span>신고사례</span> <span>요금계산기</span> <span>리뷰</span> <span>게시판</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span>mobizen</span> <span>마이페이지</span> <span>로그아웃</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h4>불법촬영물등 신고 안내</h4> </div> <p>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각각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p> <p>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일정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불법촬영물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aff;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불법촬영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li> <li>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aff;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허위영상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흥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작성 또는 가공한 것</li> <li>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작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aff;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아동·청소년 성착취물</b></p> <p>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중·노출하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 또는 일부를 집중·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내용이 표현된 것</p> </div> <p>만일 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게시물의 '신고' 버튼을 이용하거나 아래의 양식을 통해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aaf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10px 0;"> <b>불법 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한글, 워드) 양식</b> </div> <div style="margin-top: 20px;"> <p><b>불법 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b></p> <p>* 요청인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value="성명 또는 기존 닉네임"/></p> <p>생년월일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value="기존 비밀번호"/></p> <p>* 전화번호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value="-없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p> <p>* e-mail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value=" "/> @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value=" "/>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value=" "/> <input type="button" value="선택"/></p> <p>요청내역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p> <p>신고·삭제 요청 (중복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li> <li>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대상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근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유통·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허위영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포·판매·유통·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영상물 또는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작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li> <li>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영상물 또는 음성·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작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유통·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중·노출하는 행위·영상물·음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 또는 일부를 집중·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표현된 것</li> </ul> </li> </ul> </div>

## 서비스 별 신고버튼 화면

댓글

♡ 공감 0
신고

목록
수정
삭제

글 쓰기

전체삭제 정지등록

---

업보상부자  
2022-02-19 10:55:54

지금 자급제 혜택 많이 줄어서 별로예요 유희 추천이요! (X) 답글 공감

신고

게시글 신고

불법촬영물등 신고

클릭시 신고 전용 페이지 이동

불량 게시글 신고

신고이유 신고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상세사유 

허위신고시 경고처리 되실수 있으니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취소
신고 접수

네티켓은 법적 제재에 의존하는 타율적 해결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4원칙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5원칙 온라인 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6원칙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게시글 신고

불법촬영물등 신고

클릭시 신고 전용 페이지 이동

불량 게시글 신고

신고이유 신고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상세사유 

허위신고시 경고처리 되실수 있으니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취소
신고 접수

불이행 신고해주세요  
경고 처리 합니다.  
인증을 하실 수 없습니다.  
광고글 작성을 위한 가입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성폭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성폭

신고

글 쓰기

댓글 등록

게시글

네티켓은 법적 제재에 의존하는 타율적 해결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4원칙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5원칙 온라인 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6원칙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게시글 신고

불법촬영물등 신고

클릭시 신고 전용 페이지 이동

불량 게시글 신고

신고이유 신고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상세사유 

허위신고시 경고처리 되실수 있으니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취소
신고 접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성폭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성폭

신고

글 쓰기

댓글 등록





####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며, 스틸 이미지만 등록 가능함.(GIF 등록 불가)

- 동영상 첨부 시 필터링

사진 첨부 기능에 동영상 선택 시 허용되지 않는 파일임을 안내.



- GIF 필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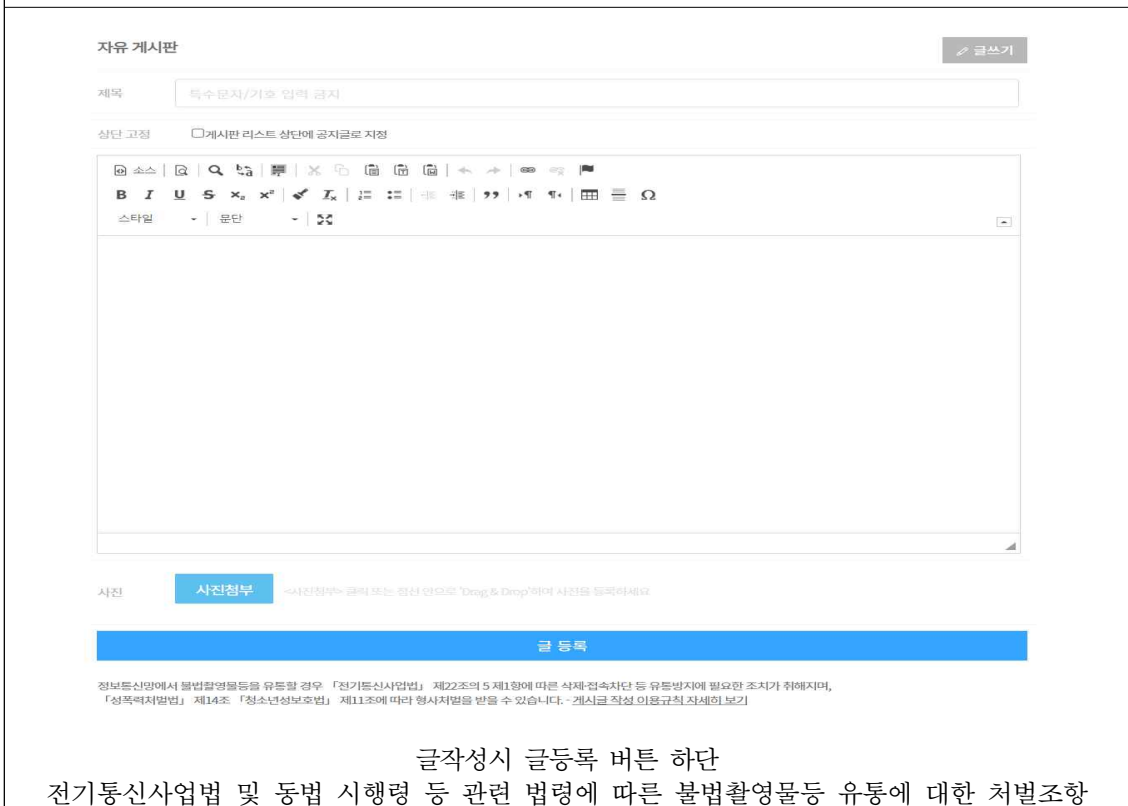
####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게시판 상단 및 글 작성 시 사전경고 안내 게재



[게시판 상단 고정 안내 문 게재]



글작성시 글등록 버튼 하단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한 처벌조항

## ○ 로그기록 보관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키워드의 필터 적용 및 게재필터 로그를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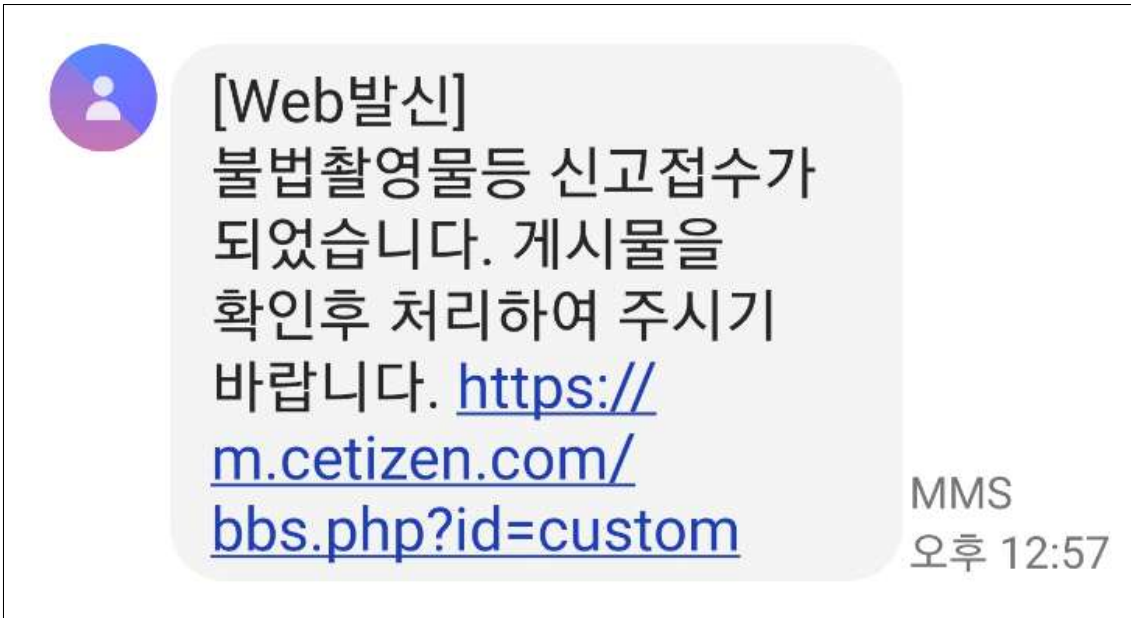
### <로그종류>

- ① 신고·삭제요청 처리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신고일자·유형 처리결과 등
- ② 검색기반 필터링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설정 단어 유형·등록일자·삭제일자·검색 제한 필터링 작동여부 등
- ③ 특징기반 필터링 및 게재제한에 포함하는 로그기록 : 파일명, 게시번호, 업로드, 계정/일시/결과 값, 필터링 작동여부, 차단값 등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신고접수 실시간 담당자 통보 및 유통방지를 위한 자동 블라인드 처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온라인 신고기능을 이용한 접수 시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SMS문자 통보 및 게시글 블라인드 처리 하여 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21. 1. 1. ~ 12. 31. 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 없음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sup>1)</sup>	0	0	0	0	0	0	0	0	0	0	0	0
		기관·단체 <sup>2)</sup>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신고사유 <sup>3)</sup>	성적 불법촬영물 <sup>4)</sup>	0	0	0	0	0	0	0	0	0	0	0	0
		성적 허위영상물 <sup>5)</sup>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sup>6)</sup>	0	0	0	0	0	0	0	0	0	0	0	0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sup>7)</sup>	삭제·접속차단 <sup>7)</sup>	0	0	0	0	0	0	0	0	0	0	0	0
		방심위 심의요청 <sup>8)</sup>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sup>9)</sup>	0	0	0	0	0	0	0	0	0	0	0	0
	삭제·차단 사유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성적 불법촬영물	0	0	0	0	0	0	0	0	0	0	0	0
		성적 허위영상물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0	0	0	0	0	0	0	0	0	0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 관련 규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이용 약관

[https://www.cetizen.com/info.php?q=use\\_law](https://www.cetizen.com/info.php?q=use_law)

#### 제 11 조 |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성인물,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도용 및 링크 또는 광고행위(광고글, 판매글 홍보 등)를 사용하는 행위
9. 상담원에게 욕설이나 음담패설 등 성희롱을 하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 20 조 | 이용제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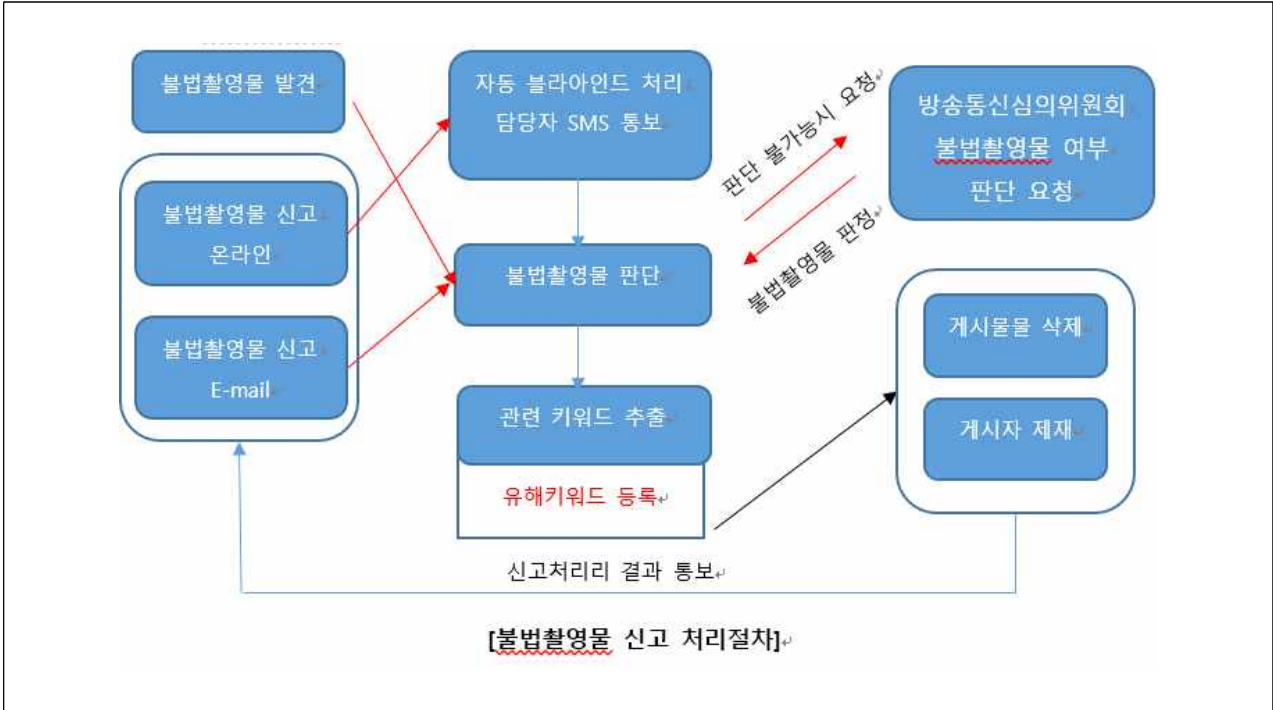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동 탈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 ⑥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접수는 피해 당사자, 제3자, 기관이나 단체 모두 신고 가능하다.
- 불법촬영물등 확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 불법촬영물등을 게시한 게시 자에게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운영정책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2회/년)으로 실시한다.
-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3년 이상 보관한다.
-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

##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정	부
성 명	황규원	임성천
부 서	경영	기술지원팀
직 책	대표이사	부사장
지정일	2020. 12. 14.	2020. 12. 14.

### ● 2022년 개정 시 변경

구 분	정	부
성 명	임성천	봉총섭
부 서	기술지원팀	기술지원팀
직 책	부사장	과장
지정일	2022. 01. 03.	2022. 01. 03.

##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1-02-09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처리에 관한 내부규정 2.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법령 본격 시행 자료	임직원 5명	1시간	자체교육
법정교육	2021-09-16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황규원 대표	2시간	방통위
교육실시	2021-10-0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바로알 기	임직원 5명	1시간	자체교육